



[시행 2017. 7. 26] [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, 2017. 7. 26, 타법개정]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(과학기술정책과) 044-202-6721, 6729

- 1 () 이 규칙은 「과학기술기본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6. 4. 14.>
- 2 () 「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을 상호교류 하고자 하는 협동연구개발 관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과학기술인교류신청서에 관련 연구사업계획서 3부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 4. 14., 2008. 3. 4., 2013. 3. 24., 2017. 7. 26.>
- 3 () ①「과학기술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9조제3항 및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간 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과 조사·연구를 담당할 전문기관(이하 “전문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 4. 14., 2008. 3. 4., 2013. 3. 24., 2017. 7. 26.>
1.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·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
 2.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유 및 지정기간
 3. 남북간 과학기술 교류협력 관련업무중 지정받아 담당할 업무 및 그 수행계획
-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,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08. 3. 4., 2013. 3. 24., 2017. 7. 26.>
- 4 삭제 <2008. 3. 4.>
- 5 삭제 <2006. 12. 29.>
- 6 삭제 <2006. 4. 14.>
- 7 () ①영 제34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연구재단의 장은 그 소속 임·직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·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·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고,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,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,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,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. <개정 2008. 3. 4., 2013. 3. 24., 2017. 7. 26.>
-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·기금재무관·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거나, 한국연구재단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수입담당임원·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·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·재정경제부장관·한국은행총재 및 관계금융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4., 2013. 3. 24., 2017. 7. 26.>
- [전문개정 2006. 4. 14.]
- 8 () ①법 제29조 및 영 제43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과학연구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 4. 14., 2008. 3. 4., 2013. 3. 24., 2016. 1. 6., 2017. 7. 26.>
1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(이 경우 “산업단지”를 “과학연구단지”로 본다)

2. 과학연구단지의 위치도 1부

3. 도로·용수·전기 및 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자료

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연구단지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08. 3. 4., 2013. 3. 24., 2017. 7. 26.>

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4., 2013. 3. 24., 2017. 7. 26.>

9 ()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49조제3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육성대상으로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08. 3. 4., 2013. 3. 24., 2017. 7. 26.>

1. 상근 임직원 2인 이상을 확보할 것

2. 과학기술진흥 실적 또는 학술활동 실적이 있을 것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육성대상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4., 2013. 3. 24., 2017. 7. 26.>

1.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, 대표자 및 주소

2. 법인 또는 단체의 목적사업, 그 밖에 허가 받은 내용

3. 과학기술진흥 및 학술활동의 현황 및 계획

4. 육성대상 법인 또는 단체로의 지정 필요성

<제28호, 2001. 7. 21.>

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<제84호, 2006. 4. 14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제96호, 2006. 12. 29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제1호, 2008. 3. 4.>(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

1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
5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까지 생략

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,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·제2항, 제7조제1항 전단·제2항,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·제2항·제3항,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과학기술부장관”을 각각 “교육과학기술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4조를 삭제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중 “과학기술부장관”을 각각 “교육과학기술부장관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서식의 뒤쪽 처리기간란 및 지정승인란 중 “과학기술부장관”을 각각 “교육과학기술부장관”으로 한다.

<51>부터 <63>까지 생략

<제1호, 2013. 3. 24.>(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

1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
6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,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, 제7조제1항 전단, 같은 조 제2항,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·제3항,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교육과학기술부장관”을 각각 “미래창조과학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한국과학재단”을 각각 “한국연구재단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“교육과학기술부장관”을 각각 “미래창조과학부장관”으로 한다.

②부터 까지 생략

<제61호, 2016. 1. 6.>(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제1호, 2017. 7. 26.>(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

1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
6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

②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,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, 제7조제1항 전단, 같은 조 제2항,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·제3항,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미래창조과학부장관”을 각각 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“미래창조과학부장관”을 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“미래창조과학부”를 “과학기술정보통신부”로 한다.

③부터 까지 생략